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654호 2018. 7. 18.(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8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3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896호 도로명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 5  
 거창군 공고 제2018-905호 「거창군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10

이 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18.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96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95-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41-6	2009-12-28	2018-07-18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9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03-6	2009-04-01	2018-07-18	철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향리 948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상촌1길 9	2009-04-01	2018-07-18	상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164-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208	2009-04-01	2018-07-18	원학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5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길 413-5	2009-04-01	2018-07-18	중산마을로 가는 길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66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262-212	2009-12-28	2018-07-18	침녕쿨의 뿌리에 속한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7-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96	2016-04-20	2018-07-18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 도로명 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6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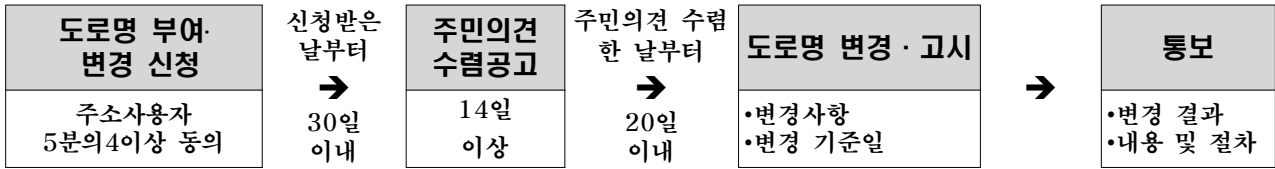
2018년 7월 18일

### 거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7. 18. ~ 8. 1. (14일간)
2.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3. 도로구간 : 주상면 덕동길 37번 ~ 147번 구간 / 도면참조
4.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조서
  - 열람방법 :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실 및 해당 면사무소 방문 열람
5.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 의견제출자 : 해당도로구간의 거주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거창군 민원봉사실, 주상면사무소
    - 팩스접수 : 055)940-3288
    - 우편접수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6. 도로명 변경 절차

○ 주소사용자 5분의4이상 동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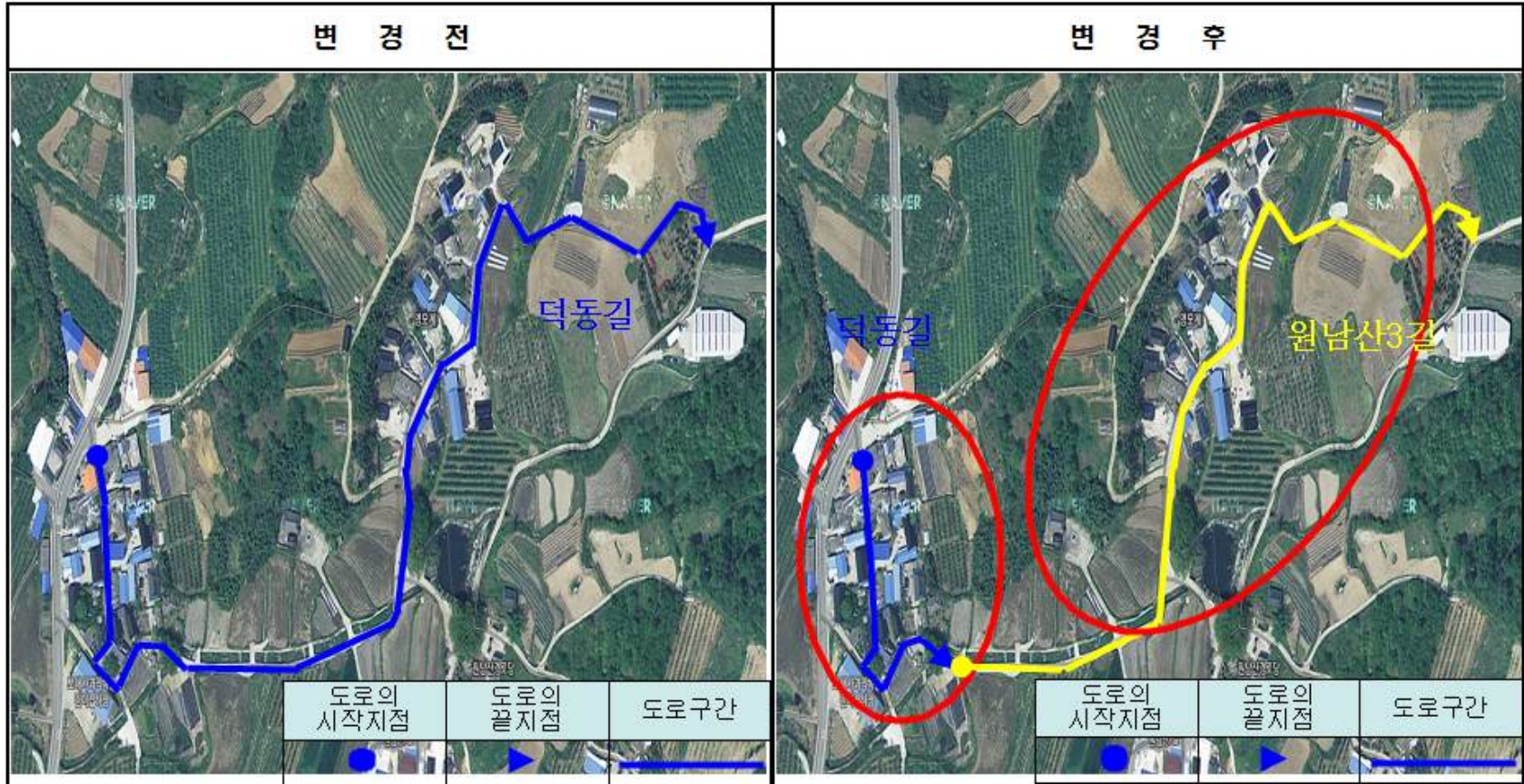


☞ 주소사용자 5분의4이상 동의 신청 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생략

※ 문 의 처 : 거창군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055-940-3312)

## 도로명변경 조서

일련번호	행정구역	구분	도로명	기 점	종 점	중앙선	건물번호 부여	주소사용자	도로명 변경 사유	비고
1	주상면	변경전	덕동길(일부구간)	주상면 남산리 1347	주상면 남산리 68-1	도면참조	15개	10명	주상면 덕동길 일부구간이 원남산마을에 속해 있어 마을 명칭에 맞게 도로명 변경	주민신청
		변경후	원남산3길	주상면 남산리 598-1	주상면 남산리 68-1	도면참조				



# 의견 제출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의견 제출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대상 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도 로 명	
의견제출 내 용	도로구간	
	도 로 명	
	의견제출 사 유	
<p>「도로명주소법」 제8조제6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p>※ 구비서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p>		<p>수 수 료</p> <p>없 음</p>



##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재기재 사항 삭제
  - 나.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수정(안 제1조)
  - 다.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표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명시(안 제2조)
  - 라. 조례 시행과 관련된 시행규칙 규정 명시(안 제3조)
  - 마. 행정정보 공개목록 정비(안 별표)
  - 바.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삭제
4. 입법예고기간 : 2018. 7. 19. ~ 2018. 8. 8.(20일간)

5.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민원봉사실(전화 055-940-3292, 팩스 055-940-3288 또는 메일 moroya@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봉사실 민원담당(전화 055-940-3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

1. 정기공개

행정정보	세부 업무	공개부서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해당연도 업무계획	군정계획	기획감사실	연1회	3월 중	인터넷 등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연1회	2월 중	“
예산, 결산, 기금 등 재정현황	예산서(당초예산)	기획감사실	연1회	의회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	“
	재정운영상황개요 (기금운용계획 포함)	기획감사실	연1회	2월 중	“
	결산	재무과	연1회	결산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	“
	재무보고서	재무과	연1회	의회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	“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획감사실	연1회	11월 중	“
주요 업무평가 및 추진상황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기획감사실	연1회	1월 중	“
	군정성과평가 결과	기획감사실	연1회	3월 중	“
업무추진비	군수 및 5급 이상 기관, 시책 업무추진비	해당 실과	월1회	매월	“
지방의회 질의,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과	연1회	감사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군의 부문별 주요 통계	인구통계	기획감사실	월1회	매월	“
	지적통계	민원봉사실	월1회	매월	“
	통계연보	기획감사실	연1회	4월 중	“
	사업체통계	기획감사실	연1회	4월 중	“
부서별 주요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지원현황	기획감사실	연1회	1월 중	“
	거창군민대상 수상현황	행정과	연1회	9월 중	“
부서별 주요 현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물품, 용역)	재무과	월1회	매월	인터넷 등
	민원처리실적	민원봉사실	월1회	매월	“
	토지거래현황	민원봉사실	월1회	매월	“

행정 정보	세부 업무	공개부서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결혼증개업소현황	복지정책과	연1회	1월 중	“
	관광사업체현황	문화관광과	분기1회	1,4,7,10월 중	“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경제교통과	월1회	매월	“
	주택보급률	도시건축과	분기1회	1,4,7,10월 중	“
	공동주택 하자보증서현황	도시건축과	분기1회	1,4,7,10월 중	“
	건축허가현황	도시건축과	분기1회	1,4,7,10월 중	“
	건축착공현황	도시건축과	분기1회	1,4,7,10월 중	“
	건축사용승인현황	도시건축과	분기1회	1,4,7,10월 중	“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다중이용시설현황	환경과	분기1회	1,4,7,10월 중	“
	상수도 보급률	수도사업소	연1회	2월 중	“
	하수도 보급률	수도사업소	연1회	2월 중	“
	차량등록현황	민원봉사실	월1회	매월	“
수질검사 결과	상수도 정수장의 수질검사 결과	수도사업소	월1회	검사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수도사업소	월1회	검사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수도사업소	월1회	검사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 2. 수시공개

행정 정보	세부 업무	공개부서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예산, 결산, 기금 등 재정현황	예산서(추경예산)	기획감사실	수시	의회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	인터넷 등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조정	환경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보증명 등 수수료 조정계획	재무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상수도 사용료 조정계획	수도사업소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하수도 사용료 조정계획	수도사업소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민원처리업무 관련 업무편람	민원업무편람	민원봉사실	수시	편람제작일부터 1개월 이내	“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결정사항	도시건축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사항	도시건축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	도시건축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기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도시건축과	수시	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법규위반 업소	식품위생 관련 법규위반 업소 위반내용, 조치 결과	민원봉사실	수시	수시	“
	대기, 수질 등 환경 관련 법규위반 업소 위반내용, 조치 결과	환경과	수시	수시	“
부서별 주요 현황	인사발령사항	행정과	수시	수시	“
	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복지정책과	수시	수시	“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복지정책과	수시	수시	“
	노인전문병원현황	복지정책과	수시	수시	“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복지정책과	수시	수시	“
	지역아동센터현황	복지정책과	수시	수시	“
부서별 주요 현황	아동그룹홈현황	복지정책과	수시	수시	인터넷 등
	장난감대여점	복지정책과	수시	수시	“
	청소년시설현황	평생교육센터	수시	수시	“

행정 정보	세부 업무	공개부서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보육시설 설치안내	복지정책과	수시	수시	“
	보육시설현황	복지정책과	수시	수시	“
	등산로현황	산림과	수시	수시	“
	병원 및 종합병원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의원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한의원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치과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약국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의료기기업소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안경업소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야간, 공휴일 진료기관	보건소	수시	수시	“
	안마시술소, 안마원 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소독업체현황	보건소	수시	수시	“
	식품위생업소현황	민원봉사실	수시	수시	“
	공중위생업소현황	민원봉사실	수시	수시	“
	약수터현황	수도사업소	수시	수시	“
지방의회 질의,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원별 질문답변	의회사무과	수시	수시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현행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2. “총괄부서(접수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집행기관”이란 군(군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거창군 조례에 따라 성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공개”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군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행정과장이 지원·관리한다.

② 집행기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정보공개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5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리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

④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며,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군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공개범위·주기·시기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공표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공표한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 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 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집행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촉직 4명(외부전문가 3명, 군의원 1명)과 당연직 3명(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유지 등) ① 심의회는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비밀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는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안전의 상정) ① 심의회에 안전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전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적절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조례 제2107호 제정 2012.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